

## 학생출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학칙 제40조제2항에 의한 출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 학생은 당해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결석) 결석이라 함은 정규 수업시간(학교행사 포함)에 불참, 강의도중 퇴실함을 말한다.

제4조(인정사유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br>(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
| 1 | 본인결혼                      | 7일               | 청첩장                        |
| 2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류            |
| 3 | 학생본인의 입원치료 기간             | 2주이내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br>또는 입원확인서 |
| 4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참석확인증 또는 관련해당서류            |
| 5 | 교육실습, 현장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학과공문 또는 인정서류               |
| 6 | 학교대표로 행사참가                | 해당기간             | 행사관련공문                     |
| 7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서류                   |
| 8 | 졸업예정자(4학년2학기)의 취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취업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제5조(출결인정 절차) ① 출석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5일 이내에 출결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결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출석 인정하고자 하는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결확인) 교원은 출결석사항을 출석부에 기록하고, 매학기 기말고사 전에 출석미달 학생에게 성적 취득 자격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부정출석방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만 처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리출석을 부탁한 자와 대리출석을 해 주는 자에게는 해당 수업의 출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수업의 출석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4조 제8호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출결인정신청서

|        |     |     |     |
|--------|-----|-----|-----|
| 결<br>재 | 담 당 | 부 장 | 처 장 |
|        |     |     |     |

|               |                                                                                              |  |  |     |               |  |
|---------------|----------------------------------------------------------------------------------------------|--|--|-----|---------------|--|
| 학과(부)장        | ※ 확인란                                                                                        |  |  |     |               |  |
| 소 속           | <input type="checkbox"/> 학 부 (                      학과(부))                                   |  |  | 학 년 | ※ 일반대학원은 해당학기 |  |
|               | <input type="checkbox"/> 신학대학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대학원(                      과)       |  |  |     |               |  |
| 성 명           |                                                                                              |  |  | 학 번 |               |  |
| 연락처           |                                                                                              |  |  |     |               |  |
| 결석기간<br>(시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br>(       :       -       :       ) |  |  |     |               |  |
| 사 유           |                                                                                              |  |  |     |               |  |

학칙 제 40조의 2에 의거 출결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출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 인 (인)

대신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주의사항 : 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의 확인을 본인이 직접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의 출결인정확인서는 교무과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과목별 담당교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

## 출결인정확인서

|                      |                                                                   |        |         |             |       |
|----------------------|-------------------------------------------------------------------|--------|---------|-------------|-------|
| 소 속                  | <input type="checkbox"/> 학 부 ( 학과(부))                             |        | 학 년     | ※일반대학원은해당학기 |       |
|                      | <input type="checkbox"/> 신학대학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대학원( 과) |        |         |             |       |
| 성 명                  |                                                                   |        | 학 번     |             |       |
| 연락처                  |                                                                   |        |         |             |       |
| 사 유                  |                                                                   | 출석인정기간 | - ( 일간) |             |       |
| 수 강 신 청 과 목(결 석 과 목) |                                                                   |        |         |             |       |
| 과 목 명                | 학점                                                                | 담당교수명  | 과 목 명   | 학점          | 담당교수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칙 제 40조의 2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하여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신대학교 교무처장